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제정에대한 건의서-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00. 12. 9.

제안자 : 산업건설위원회

1. 제안이유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 국회 상정과 관련한 의회 차원의 의견 개진
- 법률안 시행시 구미공단 입주업체 및 구미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재정적 부담 가중 방지

2. 주요내용

- 한강특별법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유보 내지 폐기 요구
- 낙동강특별법 주요내용 (규제사항)
 - 상수원댐 및 그 상류하천 중 대통령이 정하는 거리이내의 지역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 축사·숙박·음식점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농약·비료의 사용을 규제
 - 취수주변지역으로서 지천의 수질이 본류 수질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반드시 지정
 -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 지방자치별로 오염 부하량을 할당한 후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 도시개발, 산업단지, 공장 등의 인·허가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재정지원 중단 등
 -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강화 측면에서 산업단지 내에는 완충 저류 시설 등을 설치토록 의무화

2. 건의서(안) 내용

붙임 내용과 같음.

3. 건의처

국회,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환경부,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제정에대한 건의서

태백준령에서 발원하여 남해로 흐르는 낙동강은 7,000만 배달민족을 잉태한 생명의 근원이요 조국 근대화의 원동력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닌 자손만대에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자산으로, 국민 모두가 소중하게 이용하고 깨끗이 보전되어야 함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주지의 사실 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 제출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은 환경보전에 대한 의욕만 앞세워 지나친 행위제한을 골간으로 졸속 입안된 법령으로서, 낙동강 수계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나아가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을 두고 상하류 지역인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을 둘로 나누어 물 분쟁을 야기시키고 이견투구케 하여 갈등을 조장하므로서, 또 다른 지역 이기주의를 낳게 하는 우를 범하게 됨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문제의 이 법률안은 마땅히 폐기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법률안은 맑은 물 보전을 위한 의무화 규정이 대부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 시행을 유도하고 있는 한강수계특별법보다 행위규제가 훨씬 강화되어 있어 지역 간의 형평성이 어긋남은 물론, 이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지역을 포함한 낙동강 증상류지역 공단입주 기업체들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 경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국가 전체 수출의 8%를 차지하는 내륙 최대 산업단지인 구미 국가공단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여 국가경제 발전에도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으며, 시행중인 구미4공단 조성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맑은 물 보전을 위한 낙동강수계법안의 의무적 시행은 2,000만 수도권 지역의 식수 공급원인 한강에 먼저 적용해야 하고, 전국 연근해를 비롯하여 4대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하여 규제하는 법을 제정함은 불합리할뿐더러 공청회 개최 한번 없이 지역 주민의

부담만 과증시키는 특별법의 제정은 실로 부당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을 것으로서, 낙동강특별법을 다음과 같이 한강특별법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유보 내지는 폐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오염총량관리제의 경우, 사업장별 할당된 오염부하량 보다 낮게 배출하는 업체에 대하여 배출권거래제도 도입과 자연보전권역의 행위제한 일부 배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 물이용부담금 부과는 기업체 제품원가 상승을 수반하므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공업용수에 대하여는 요율을 낮게 차등 적용 하고
- 수변구역 지정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 가능토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결정 할 수 있도록 함

부득이 낙동강 맑은 물 보전을 위하여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법 제정에 앞서 공청회 등을 개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낙동강 수계 영향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점을 도출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질 개선으로 상하류 지역의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결점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34만 구미시민의 의견을 모아 건의 드립니다.

2000. 12. 21.

구미시의회 의원일동